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8. 4.

발 의 자 : 윤서규 · 김영호 · 김익수
박순이 · 우진석 · 이갑선
임춘구 · 허 복(8인)

1. 제 안 이 유
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함

2. 주 요 내 용
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『간사』의 호칭을 『부위원장』으로 변경 (안 제11조)

3. 참 고 사 항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로 한다.
제11조의 제목 “(간사)”를 “(부위원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간사”를
“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간사는”을 “부위원장은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.....
제11조(간사)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	제11조(부위원장)①.....부위원장... ② 부위원장은..... ③..... 부위원장이

찬성자(발의자)서명명부

(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[illegible]